

딥노이드

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

제1장 통칙

제 1 조 [목적]

이 부패방지 가이드라인(이하 "이 가이드라인")은 각 국가의 부패방지 법령(대한민국의 「형법」 및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미국의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("FCPA"), 영국의 Bribery Act, OECD 뇌물방지협약 등(이하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"관련 법령")을 준수할 수 있도록 딥노이드의 임직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[적용범위]

이 가이드라인은 딥노이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 조 [부패방지 관련 법령 준수]

- ① 회사의 임직원 등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,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 등에게 부패방지 법령을 위반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
- ②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비즈니스의 관행에 따른 행위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.

제 4 조 [뇌물 수수]

① 뇌물은 이해관계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제공되거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서, 어떠한 경우에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됨. 뇌물을 받거나 요구받았을 때에는 거절하고 즉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뇌물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.

1.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2. 음식물·주류·골프 등의 접대·향응 또는 교통·숙박 등의 편의 제공
3.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 부여 등 그 밖의 유형·무형의 경제적 이익 (이해관계자의 자녀를 통상의 절차 없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, 이해관계자의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것 등 포함)
4. 회사의 서비스·시설·재산의 무상사용

③ 뇌물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직접·간접적으로 이해 관계를 가지는 사람 또는 조직이나 집단을 의미하며,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만일 특정인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,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1. 공직자

- 1) 회사들이 소재한 해당 국가(이하 "해당 국가")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
- 2) 해당 국가 정부의 입법,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
- 3) 당 국가의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과반을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

있는 기업체의 임직원

4)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, 의료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

5) 해당 국가 내 공직 선거의 후보자 (도지사, 시장 선거 등에 출마하는 후보자), 정당 또는 정당의 임원 내지 직원

6) 기타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

2. 거래처

회사의 고객사, 거래업체 및 협력업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하는 제3자

④ 뇌물이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제공된 경우 해당 상황에서 벗어난 후 즉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.

제 5 조 [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(Facilitation Payment)]

①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은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의 일상적·반복적 업무의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말하며,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. 특히,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부적절한 재량을 행사하도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은 뇌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급 불가한다

② 다만,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은 허용될 수 있다.

③ 만일 급행료 또는 촉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, 사전에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에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,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.

제 6 조 [식사, 선물, 여행 등 접대]

① 원활한 업무의 진행 또는 사고 등의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또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의 금액 내 선물, 식사 등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.

② 다만,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 정부 관계자, 고객, 협력업체, 제3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또는 이들로부터 부적절한 영향력을 주거나 받기 위한 식사 등의 접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.

③ 식사, 선물, 여행 등 접대의 허용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.

1. 합법적이고 통상적인지 여부
2. 금액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
3. 반대급부(보답, 특혜 제공 등)가 있는지 여부

④ 회사는 위 가이드라인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식사 등 접대에 관한 또는 세부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 7 조 [기부]

① 회사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, 자선적, 공익적, 사회환원적 목적에서 자선단체 등을 상대로 기부를 할 수 있다.

② 다만,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여하한 부정할 이익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등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는 기부는 금지되며, 이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부금을 집행하기에 앞서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과 상의하여야 한다.

제 8 조 [위반행위 또는 의심상황에 대한 신고]

- ① 이 가이드라인 및 기타 부패방지 법령의 위반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, 컴플라이언스 전담조직이나 신고채널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신고채널을 통해서도 위반행위나 의심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고 채널에 명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.
- ③ 신고내용이나 신고자를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9 조 [위반시 조치]

- ① 회사는 해당 국가 내의 관련 법령, 이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하여, 회사 내의 인사규정 및 해당 국가의 근로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유를 분석한 후,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교육, 관련 업무 절차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[제3자와의 거래 시 조치]

- ①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,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가 부패방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, 회사 주도의 조사, 손해배상,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③ 단, 해당 국가의 법령상 부패방지 의무를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, 거래의 성격,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1 조 [기타]

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사규화하여 회사의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. 단, 이 때 당해 국가의 법령 등 사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문서번호: DN-CR-025

제정일자: 2024.11.11